

2018년 9차 이주민분과 회의록

일 시	2018년 9월 14일(금) 16:00 ~ 17:30					
장 소	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중회의실					
참석자(총9명) 9/14 공(0/2) 민(9/12)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
	이재숙(공공분과장)	X	김범수	X	고정미	O
	김민정(민간분과장)	O	송경순	O	손녕희	O
	이은희(총무)	X	엄현희	X	전정준	O
	김민정	O	이현우	O	이규일	O
김윤진	O	정지영	X			
회의주제 및 안건	<p>1. 인사 및 공유</p> <p>1) 전차회의 결과 공유</p> <p>2. 안건 논의</p> <p>1)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 평가</p> <p>2)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모니터링</p> <p>3. 기 타</p> <p>1) 기관 행사 및 전달사항</p> <p>2) 차기회의 일정</p>					

회의 결과

1. 인사 및 공유	<p>1) 전차회의 결과</p> <p>- 이견 없음. 사업 조율 중 내용이 많이 변경된 ‘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’의 경우 조례 개정은 추진 불가, 사업비만 확보하여 단체장 공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추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상세 논의할 수 있도록 함</p>
2. 안건 논의	<p>1)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 평가</p> <p>※ 별첨자료1 참고</p> <p>- 변경사항</p> <p>: 이주민 가족 자녀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초기상담 지원 사업은 올해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자체 사업으로 이미 진행한 바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4기 수립 계획 시 시민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된 과제가 아님. 따라서 신규사업에서 지속보완사업으로 변경함</p> <p>2)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모니터링</p> <p>※ 별첨자료2 참고</p> <p>- 추후 확인사항</p> <p>: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재정 계획 변경 사유를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한 결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감소로 확인됨. 다문화팀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시에 따</p>

회의 결과

라 시비 비율이 결정됨

3) 이주민분과 위원 구성 논의

- ①수원이주민센터 참여 못 한다고 말한 적이 있음
 - ②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는 공연단이지만 꾸준한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어 잘 모르겠음
 - ③경기다문화사랑연합 분과에 위촉해도 관참을 것으로 보임
 - ④수원엠마우스 이주민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업무 연락하고 있음
- ②~④ 해당 기관에 분과 요청으로 참석 권유하겠음

3. 기 타

1) 기관 행사 및 전달사항 공유

- 10월 회의안건 : 2019년 시행계획(안) 논의

2) 차기회의 일정

- 일 시 : 2018. 10. 22.(월) 16:00
- 장 소 :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

회의사진



※ 별첨자료1.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이주민부문 수립 과정 평가
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(수립과정 및 내용 평가)

- 평가목적
 -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보완·개선해야할 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고자 함
- 평가방법 : 각 실무분과(추진전략)별로 계획 수립 과정과 세부사업 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
- 평가양식

평가분야	평가기준	배점(시군구)	지표 성격	평가 점수	평가점수 이유 기술
계획수립 과정	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실행결과 평가(자체평가)의 충실성	7	정성		
	지역사회보장 여건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의 적절성	7	정성	7	워크숍과 TF회의 등 여러 과정이 있었으나 반영이 안 된 것 같음. FGI에 결혼이주자 외 미혼이주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의견을 수렴하지 못함. 그러나 고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지원, 건강에 대한 욕구는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함
	계획수립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	5	정성	3	FGI 질적조사 대상 9명의 의견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인원 수를 높이고 원탁토론 진행 시 사전 준비 및 당일 의견 도출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음
	계획수립과정의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	6	혼합	4	민간위원 간에도 합의점을 도출해내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공위원 참석률이 낮아 누구를 위한 분과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음
	계획수립 일정 및 절차 준수	5	정성	4	기본적인 전달체계 외에 분과만의 일정이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
계획 내용의 적절성	<i>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</i>	5	혼합		
	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의 합리성	5	정성	5	분과 내 민관 위원들이 함께 논의하여 계획함.
	세부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	8	정성	7	긴급지원 사업이 조율 과정에서 내용 수정이 이루어져 당초 계획과는 달라졌으나 문제 제기한 것에 의의를 가짐
	<i>전체 자체사업예산 대비 자체복지사업예산 비율</i>	7	정량		
	제3기 사업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 반영 정도	6	정성		
	사업내용과 성과목표,	6	정성	3	신규사업의 경우 적절한 지표를 찾을 수 없어

평가분야	평가기준	배점 (시군구)	지표 성격	평가 점수	평가점수 이유 기술
	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				어려움이 있었음
	재정계획의 합리성 및 총실성	6	혼합	3	재정계획 내용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합리적 이지 않음. 특히 긴급지원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진하지 않으면 소진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
	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 개선 계획의 적절성	6	정성	4	분과 참석률을 높여야 할 것임
	단체장 공약 및 관심사항 반영 정도	5	혼합	3	이주민 부문에 대한 공약사업이 충분하지 않았 음
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	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적절성	5	정성		
	지역사회보장지표(통계) 생산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	5	정성		
	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	5	정성		
합계		99			

※ 별첨자료2. 이주민분과 2018년 시행계획 변경모니터링

연번	사업번호	구분	사업명	세부사업	담당부서	담당팀	담당자	모니터링 의견
1	1-5	지역	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및 지원	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및 지원	여성정책과	다문화팀	이원지	-새일센터 취성패 사업의 일환 중 결혼이민자 참여를 실제로 측정하는 것인지 질의 -목표수준: 단순참여자 수를 측정하는 것보다 취업 연계율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임. 내용에 취업준비 및 취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함
2	3-7	보편	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	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	여성정책과	다문화팀	이원지	-인력충원: 가족생활지도사 양성과정 및 채용조건의 제약이 많아 센터에 연계가 어려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. 체계 개선이 필요함
3	3-7	보편	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	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	여성정책과	다문화팀	이원지	-인력충원: 현재 언어발달지도사 1인당 담당 대상자가 26명임. 많은 대기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, 또다른 접근방법 모색이 필요함
4	6-6	지역	다문화사회 인식 개선	다문화사회 인식 개선	여성정책과	다문화팀	유옥선	-목표수준: 실질적으로는 교육 수행횟수를 학교가 아닌 반으로 측정하며 1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음. 필요성에 비해 목표수준이 미비함